

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7일				
공사명	의무사용 대상 여부		[]해당 []미해당				
발주자	전화번호						
착공일	준공예정일						
공사금액 (만원)	공사위치						
전체 천연골재 사용계획	용도	규격	소요량(톤)	전체 콘크리트·아스콘 제품 사용계획	용도	규격	소요량(톤)

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

구분	용도	규격	소요량(톤)	공급업체	소재지
순환골재					
순환골재 재활용제품					

② 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 (일부 미사용인 경우 포함)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발주자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제출서류	1.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) 2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작성 및 제출 방법

1. 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 중 '공급업체명', '소재지' 는 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한 경우에 기재하지 않습니다.
 2. 위의 1.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, ② 미사용 또는 미기재 사유란에 '공사착공 시점과 순환골재 사용 공사 시점이 2년 이상 차이가 있어 순환골재 공급업체를 예정하지 못하였음' 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, '설계내역서 사본'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.
-